

대학원 경제학과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경제학과와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경제학과 소속 교수들은 경제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이론경제, 응용경제, 경제사 분야를 통합한 단일한 경제학 전공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제5조 (과목개설) 논문작성을 위한 이론경제, 응용경제, 경제사 분야의 세미나를 비롯하여 각 분야의 연구지도에 적절한 과목을 개설한다.

제6조 (교·강사 배정) 전임교원 배정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소속 교수들에게 공지하고 외래강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 가. 학위논문 혹은 연구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1학기 말(편입생은 편입한 학기 초)에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정한다.
- 나. 논문지도교수는 선정 당시 2년(박사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3년) 이내에 정년퇴임을 하지 않는 교원이어야 하며, 논문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 후 2년까지 논문을 지도할 수 있다.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한다.
1. SCI급 학술지 논문게재(교신저자, 제1저자 포함)시 면제
 2.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교신저자, 제1저자포함) 논문게재 시 면제
 3.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게재 시 2편당 1과목 면제
- 나. 논문게재를 통해 종합학력시험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시험 30일 이전에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발간되어야 한다.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 가. 종합학력시험은 석사학위의 경우 미시경제학I, 거시경제학I 2개 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며, 박사학위의 경우 이 외에 신청자가 선택한 2개 과목을 추가하여 총 4개 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시행한다.
- 나. 종합학력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해당 과목을 맡은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격점수는 과목별 80점 이상으로 한다.
- 다. 박사학위 종합학력시험에서 추가되는 2개 과목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체 4개 과목 중 논문지도교수의 과목이 1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내국인은 영어로 외국어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며, 외국인은 영어와 한국어 중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치른다.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 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 말 학위논문, 연구논문 중 학위취득 방법을 택일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는다.
- 나. 연구논문 작성을 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학위취득 방법 선택에 앞서 지도교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유서를 첨부하여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 가. 석사학위논문 : 해당 분야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며, 논리전개에 결함이 없고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나. 박사학위논문 :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하며,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 다. 제출한 학위논문이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합격으로 판정한다.
- 라. 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에 행하며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14조 (예비발표)

- 가. 석사학위논문 :
 1.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 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2.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이 참석한 공개적인 발표회에서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 나. 박사학위논문 :
 1.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 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2. 논문제출자는 공식 예비심사와는 별도로 심사위원이 참석한 공개적인 발표회에서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4. 논문제출자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에 1회의 공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5.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식 예비심사의 심사요지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논문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학과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심사위원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석사학위과정: 지도교수 포함 교내 전공교수 3인 이상
2.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 지도교수 포함 5인 이상 (교내 3인, 교외 2인. 다만 본교 비전임교원은 교내전공자로 본다.)

제16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 가.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논문은 지도교수 포함 교내 전공교수 2인 이상을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석사학위논문에 준하는 심사(자격시험, 연구계획서, 예비발표)를 진행한다.
- 나. 제출한 연구논문의 합격 여부 판정은 심사위원장의 의견을 우선한다.
- 다. 연구논문의 심사는 석사학위논문과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한다.

제17조 (논문대체 제출)

- 가. 심사에 합격한 연구논문은 제본분(겉표지가 하드커버가 아니어도 무방)과 파일, 표절 검사결과 확인서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 학과에서는 제출 받은 논문을 3년 동안 보관하며, 이후 폐기할 수 있다.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8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0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